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7
----------	----

제출년월일 : 2019. 0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수행 등을 위한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0조의 근거에 의하여 보건 의료사업 업무중 일부를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봉직 의)에게 대행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업무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나. 결격사유,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 다. 실비보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19년 1회 추경예산 반영 요청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12.24.~2019.01.12.)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반영완료)
 - 성별 표기 : 남·녀 구분 표기(별지 1~2)
-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9.01.28.) : 원안의결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효과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대행자”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 업무대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정·지정하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신청하는 의료인 또는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인 중에서 해당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업무대행자가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해당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가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그 밖에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계약체결 및 해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지정한 때에는 해당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④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⑤ 군수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필요한 해지요청(통보)을 해야 한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때
3. 건강상 업무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때
4.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야기된 때
5. 예산사정상 해당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실비보조) 군수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보조하는 실비(계약서에서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 주 소 :

대행의료업무	직 종	면허번호 (자격번호)	비 고

위와 같이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 하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과 “업무대행자”와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평창군 : 평창군수

업무대행자 : 의료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평창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평창군수”는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제6조(의무) ① “평창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 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 시간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① “평창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내에 해당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평창군수”와 “업무대행자”는 이 조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그 밖의 계약조건)

가. “업무대행자”는 해당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평창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업무대행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의 정당한 해석을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라. “업무대행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마.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평창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평창군수”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평창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평 창 군 : 평 창 군 수 (인)

업무대행자 : 의 료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관계법령 발취

□ **지역보건법**[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지역보건법 제30조에 근거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 채용에 대한 업무대행비로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고려한 계약으로 평균 1인당 연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업무대행의사 채용은 도립병원 및 전국 보건의료원의 채용 지급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화기 내과계 의사 연봉의 경우 평균 256백만원~300백만원으로 1인당 연봉을 278백만원으로 추계함

나. 추계 결과

- 평창군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및 소화기내과 등 2명 채용 시 임금인상률 감안 년 556백만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함.(년 278,000천원×2명=556,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예산확보 및 업무대행의사 채용 시 타 시군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인건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 및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류 지 응
연락처	(033) 330 -48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500,000	550,000	570,000	570,000	590,000	2,780,000
	진료업무대행의사 인건비	500,000	550,000	570,000	570,000	590,000	2,7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	275,000	285,000	285,000	295,000	1,140,000
	보조금	-	275,000	285,000	285,000	295,000	1,14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